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
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9.

발 의 자 : 배준영 · 박대출 · 이상휘  
김종양 · 김은혜 · 안철수  
곽규택 · 김예지 · 김미애  
서명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, 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미세먼지,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(안 제109조).

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9조제3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 
같은 조 제6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 
같은 조 제9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9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.</p> <p>⑦·⑧ (생략)</p> <p>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<u>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.</p>	<p>제109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<u>2027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<u>2027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⑦·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----- --<u>2027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.</p>